

# 경상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 상 북 도 의 회  
(홍정근 의원 외 18명)



# 경상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 전부개정조례안

(홍정근 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br>번호 | 208 |
|----------|-----|

발의연월일 : 2019. 4. 12.

발 의 자 : 홍정근 · 박영서 · 김하수  
김대일 · 김희수 · 김종영  
이재도 · 고우현 · 한창화  
박채아 · 김상조 · 곽경호  
이춘우 · 정세현 · 임미애  
배진석 · 박미경 · 나기보  
황병직 의원(19명)

찬 성 자 : - 명

### 1. 개정이유

-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상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 위원회 구성과 운영상의 미흡한 내용의 보완과 위원의 제척 및 회피, 해임 및 해촉을 규정하여
-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과 청렴공직문화 확산을 통한 신뢰받는 공직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 2. 주요내용

- 가. 경상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7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이나 시민단체에서 추천 하는 사람으로 하고, 4명의 위원은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과 경상북도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하도록 규정함(안 제2조)
- 나.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사항과 심사 및 직무상 비밀이용 재산증식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한 법무부장관에게 조사의뢰 시 위원회의 승인, 취업제한 여부 확인 및 취업승인 등 경상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과 위원회의 관할 대상을 규정함.(안 제3조)
- 다.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5항에 따라 분과위원회는 3개 이내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각 분과위원회에는 제2조제1항의 위원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기능을 규정함(안 제4조)
- 라.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에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하도록 함(안 제5조)
- 마.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한차례 연임을 규정하고, 도의원과 소속 공무원의 경우 임기 및 임명 당시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함(안 제6조)
- 바.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함(안 제7조).
- 사.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조사의뢰 및 조사의뢰의 승인, 조치 및 관계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징계의결 요구, 고발 등은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

- 아.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직근 상급자 또는 하급자였던 경우 등 위원의 제척 및 회피 사유를 규정함(안 제9조)
- 자.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위원의 해임 및 해촉을 규정함.

(안 제10조)

- 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두도록 하고(안 제11조)
- 카. 경상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매년 전년도 재산등록 및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등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 도의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12조)
- 타.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따르도록 규정함(안 제13조)

### 3. 개정조례안 : 붙임 참조

### 4. 관련법령 : 붙임

## 5. 관련부서 협의

- 법제심사 : 불임
- 규제심사 : 불임
- 부패영향평가 : 불임
- 해당부서 검토의견 : 불임
- 비용추계서 : 불임

## 6. 참고사항

- 발의자 및 찬성자 서명부

## 경상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경상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경상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경상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7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이나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2. 4명의 위원은 경상북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2명과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 공무원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제2항제1호의 위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제2항제2호 위원으로 한다.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8조의2에 따른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서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도 소속 4급 이하 공무원과 퇴직자에 관한 사항
2. 도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3. 도의회 소속 4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4. 도내 시·군의회의 의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5. 도내 시·군의 4급 공무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제4조(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3개 이내로 설치할 수 있고 각 분과위원회에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사전 검토·조정



2.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연구

3.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④ 분과위원회가 제3항제3호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5조(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에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제6조(임기)** ①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이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의원의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도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같은 조 제12항에 따른 조사

## 의회의 승인

2.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및 제29조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 ③ 제9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직윤리제도 관련 교육 및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바로 위 상급자 또는 바로 아래 하급자이거나 바로 위 상급자 또는 바로 아래 하급자였던 경우
-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둔다.

② 간사는 도 감사관실 공직윤리담당 사무관으로 하며 사무직원은 감사실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정한다.

**제12조(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 다음 각 호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재산등록 및 선물신고
2.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3. 그 밖에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

**제13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경상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련 법 령

## □ 공직자윤리법

제8조(등록사항의 심사)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된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의무자가 등록재산의 일부를 과실로 빠트리거나 가액합산 등을 잘못 기재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의무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재산등록서류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등록의무자에게 자료의 제출요구 또는 서면질의를 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의무자에게 해명 및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보고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기관·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보고나 자료 제출 등을 거부할 수 없다.

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금융거래의 내용(신용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도 불구하고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은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2009. 4. 1.>

⑥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의무자와 그 배우자, 등록의무자의 직

계존속·직계비속, 그 밖의 재산등록사항 관계인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진술을 받을 수 있다.

⑦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거짓으로 등록하였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등록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고 기간을 정하여 법무부장관(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⑧ 법무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조사의뢰를 받으면 지체 없이 검사(檢事) 또는 군검사에게 조사를 하게 하고 그 조사 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6.>

⑨ 제8항에 따른 검사나 군검사의 조사에 관하여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군사법원법」을 포함한다) 중 수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인신구속에 관한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6.>

⑩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5조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 또는 제6조에 따른 변동신고사항을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공개한 후 3개월 이내에 재산공개대상 공직자 전원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로써 심사기간을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⑪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재산공개대상자가 아닌 등록의무자의 등록사항에 대한 심사를 등록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관계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을 받은 기관의 장은 심사결과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⑫ 제11항에 따라 위임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5항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를 하려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개대상자

및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공직선거후보자 등의 재산등록사항을 심사할 때 필요한 경우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재산의 소유자별 취득일자, 취득경위 및 소득원 등(이하 이 조에서 “재산형성과정”이라 한다)을 소명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요구받은 사람은 소명내용에 대한 재산등록 기준일부터 과거 3년간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⑭ 제13항에 따라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요구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소명 및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⑮ 제13항 및 제14항에 따른 재산형성과정의 소명 및 자료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⑯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를 제9조 제2항 제8호에 따른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으며,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탁받은 명의인에 대한 자료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비용은 해당 사무를 위탁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부담한다. <신설 2015. 12. 29.>

[전문개정 2009. 2. 3.]

**제8조의2(심사결과에의 처리)**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심사(제9조의2에 따른 재심사를 포함한다) 결과 등록대상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1. 경고 및 시정조치
2. 제3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3.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사실의 공표

4. 해임 또는 징계(파면을 포함한다) 의결요청

② 제1항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를 인정하려면 등록된 재산과 등록에서 빠진 재산의 규모·종류 및 가액과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조치 중 제3호의 조치는 다른 조치에 부수하여 함께 할 수 있다.

④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등록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 제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를 법무부장관(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조세 관련 법령의 경우에는 국세는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지방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통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2. 3.]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에 각각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 7. 29.>

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제8조 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 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각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7. 29., 2015. 12. 29.>

1.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국회의원, 국회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법관, 법원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3.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헌법재판소재판관,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5.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회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시·군·구의회의원, 시·군·구의 4급 공무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6.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시·군·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시·군·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7.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4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8.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공직자 외의 공직자와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

원장을 포함한 3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9.>

④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의 임기, 선임 및 심사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1. 7. 29.>

1.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국회규칙
2.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대법원규칙
3.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헌법재판소규칙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5.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대통령령
6.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11. 7. 29.>

⑥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법과 제4항 각 호에 규정된 규칙, 대통령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9.>

[전문개정 2009. 2. 3.]

**제18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①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일부터 3년 동안 취업제한기관에 취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17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2. 30.>

② 취업심사대상자가 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받거나 제2항에 따라 취업승인의 신청을 받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29.]

**제18조의2(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 ① 모든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제17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퇴직 후에 취급할 수 없다.

②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이 취업한 취업제한기관에 대하여 처리하는 제17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퇴직한 날부터 2년 동안 취급할 수 없다. <개정 2014. 12. 30.>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 등 해당 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취급이 해당 업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기관의 범위와 제3항의 승인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7. 29.]

**제20조의2(국회 등에 대한 보고)**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또는 해당 지방의회 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 전년도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승인을 하거나 제18조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취업할 수 있다고 통지하는 때에는 그 결과를 포함한다)와 감독, 그 밖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9., 2014. 12. 30.>

② 제1항의 연차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2. 3.]

**제22조(징계 등)**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사유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9., 2015. 12. 29.>

1. 제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재산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6조 제1항(등록의무자가 된 후 3개월 이내에 같은 항에 따른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의 변동사항 신고에 관한 같은 조 제3항을 포함한다)·제8항, 제6조의2 및 제11조 제1항을 위반하여 변동사항 신고 또는 주식거래내역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명자료의 첨부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8조 제13항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소명 요구에 대하여 거짓으로 소명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4. 제8조 제1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0조 제3항(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등록사항을 열람·복사하거나 이를 하게 한 경우
6. 제12조 제1항(제6조의2제4항 및 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허위등록 등 불성실하게 재산등록을 한 경우
7. 제12조 제2항(제6조의2제4항 및 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의 등록사항 심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8. 제13조(제6조의2제4항 및 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재산등록사항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경우
  9. 제14조(제6조의2제4항, 제11조제2항 및 제14조의4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재산등록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10. 제14조의4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1. 제14조의6을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14조의7 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
  13. 제14조의7 제2항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여한 경우
  14. 제14조의10 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백지신탁계약을 해지한 경우
  - 14의2. 백지신탁한 주식 또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한 직무를 회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4조의11 제1항을 위반하여 해당 주식과 관련한 직무에 관여하였거나 제14조의11 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5. 제15조를 위반하여 외국에서 받은 선물 또는 외국인에게 받은 선물을 신고 또는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
  16. 제18조의4 제2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받은 사실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17. 제18조의5 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을 위한 청탁행위를 한 경우
- [전문개정 2009. 2. 3.]

제24조(재산등록 거부죄) ① 등록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

등록을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0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직선거후보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 2. 3.]

**제24조의2(주식백지신탁 거부의 죄)** 공개대상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의4 제1항 또는 제14조의6 제2항을 위반하여 자신이 보유하는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지 아니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 2. 3.]

**제25조(거짓 자료 제출 등의 죄)** 공직자윤리위원회(제8조제11항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재산등록사항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등록기관의 장 등을 포함한다. 이하 제26조에서 같다) 또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로부터 제8조 제4항 및 제5항(제6조의2제4항, 제11조제2항 및 제14조의4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4조의5 제10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각 기관·단체·업체의 장이 거짓 보고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 2. 3.]

**제26조(출석거부의 죄)**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제8조 제6항(제6조의2 제4항, 제11조제2항 및 제14조의4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 2. 3.]

**제27조(무허가 열람·복사의 죄)** 제10조 제3항(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재산등록사항을 열람·복사하거나 이를 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 2. 3.]

**제28조(비밀누설의 죄)** ① 제14조(제6조의2제4항, 제11조제2항 및 제14조의4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재산등록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또는 직무상 재산등록사항을 알게 된 사람이 공개된 재산등록사항 외의 재산등록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4조의3(제6조의2제4항, 제11조제2항 및 제14조의4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은 사람이 그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2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함께 부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2. 3.]

**제28조의2(주식백지신탁 관여금지 위반의 죄)** ①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제14조의7 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구하거나, 신탁업자·집합투자업자·투자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임직원이 정보제공 요구에 응하면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제14조의7 제2항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여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 2. 3.]

**제29조(취업제한, 업무취급 제한 및 행위제한 위반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2. 30.>

1. 제1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사람
2. 제18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재직 중 본인이 직접 처리한 업무를 퇴직 후 취급한 사람
3. 제18조의4 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임직원을 상대로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 행위를 한 사람

[전문개정 2011. 7. 29.]

##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 5. 29.>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관련부서 협의

## 1 법제심사 (혁신법무담당관 법제담당)

| 실·과 | 주요내용(조항) | 검 토 의 견                                                                                                                                                                                                                |
|-----|----------|------------------------------------------------------------------------------------------------------------------------------------------------------------------------------------------------------------------------|
| 감사관 | 개정 지시문   | <p>&lt;띄어쓰기 수정 필요&gt;<br/>경상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gt; 경상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
|     | 제명       | <p>&lt;제명 수정 필요&gt;<br/>경상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br/>=&gt; 경상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p>                                                                                                                           |
|     | 제1조      | <p>&lt;띄어쓰기 수정 필요&gt;<br/>경상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br/>=&gt; 경상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p>                                                                                                                                                   |
|     | 제2조      | <p>&lt;띄어쓰기 및 문장 수정 필요&gt;<br/>제1항: 위촉직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br/>=&gt; 위촉직 위원<br/>제2항제1호: 지식 =&gt; 학식<br/>추천 하는 =&gt; 추천하는</p>                                                                                         |
|     | 제3조      | <p>&lt;띄어쓰기 및 문장 수정 필요&gt;<br/>제1항제1호: 법 제8조의2 =&gt; 제8조의2<br/>제1항제2호: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br/>제1항제3호: 제18조의2제3항 =&gt; 법 제18조의2제3항<br/>업무 취급 =&gt; 업무취급<br/>제2항제1호: 4급이하 =&gt; 4급 이하<br/>제2항제2호: 임·직원 =&gt; 임직원</p> |

| 실 · 과 | 주요내용(조항) | 검 토 의 견                                                                                                                                                                                                                                                 |
|-------|----------|---------------------------------------------------------------------------------------------------------------------------------------------------------------------------------------------------------------------------------------------------------|
|       | 제4호      | <p>&lt;문장 수정 필요&gt;</p> <p>제1항: 각 분과위원회에는 제2조제1항의 위원을 포함하여<br/>=&gt; 각 분과위원회에는<br/>구성하고 =&gt; 구성하며<br/>위촉한다. =&gt;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제2항: 임명한다. =&gt; 지명한다.</p>                                                                                        |
|       | 제6조제2항   | <p>&lt;띄어쓰기 및 문장 수정 필요&gt;</p> <p>제1항의 규정에 =&gt; 제1항에도<br/>임기내로 =&gt; 임기 내로</p>                                                                                                                                                                         |
|       | 제8조      | <p>&lt;문장 수정 필요&gt;</p> <p>제2항제1호: 법 제8조제12항 =&gt; 같은 조 제12항<br/>제2항제4호</p> <p>법 제24조 부터 법 제29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고발<br/>=&gt; 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br/>28조의2 및 제29조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p> <p>제3항: 재적위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br/>=&gt; 재적위원 수 계산에서 제외한다.</p> |
|       | 제11조제2항  | <p>&lt;문장 수정 필요&gt;</p> <p>감사실 공무원으로 한다.<br/>=&gt; 감사실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정한다.</p>                                                                                                                                                                           |
|       | 제13조     | <p>&lt;삭제 필요&gt;</p> <p>「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2조에<br/>규정되어 있는 내용으로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는<br/>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p>                                                                                                                                      |
|       | 제14조     | <p>&lt;문장 수정 필요&gt;</p> <p>「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따른다.<br/>=&gt;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br/>으로 =&gt; 으로,</p>                                                                                                                                                  |

## 2 규제심사 (혁신법무담당관 규제혁신담당)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3 부패영향평가 (감사관)

###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             |                                                                                             |               |             |
|-------------|---------------------------------------------------------------------------------------------|---------------|-------------|
| 자 치 법 규 명   | 경상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
| 평 가 담 당     | 감사관실                                                                                        | 직 급 성 명       | 행정7급 김 구 열  |
| 입 안 주 무 부 서 | 의원발의                                                                                        | 통 보 ( 조 치 ) 일 | 2019. 4. 5. |
| 관 련 조 문     | 검 토 결 과                                                                                     |               | 조 치 사 항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상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 부패 유발요인 없음.</li> </ul> |               |             |

## 평가항목별 검토자료

| 평가분야 | 평가항목           | 해당 여부 | 응답내용      | 첨부사항  |
|------|----------------|-------|-----------|-------|
| 준수   | 준수부담의 적정성      | X     | ① 적정      | 해당없음  |
|      |                |       | ② 높음      |       |
|      | 제재규정의 적정성      | X     | ① 적당      | 해당없음  |
|      |                |       | ② 약함      |       |
|      |                |       | ③ 강함      |       |
|      | 특혜발생 가능성       | X     | ① 없음      | 해당없음  |
|      |                |       | ② 있음      |       |
| 집행   |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X     | ① 구체적·객관적 | 해당없음  |
|      |                |       | ② 추상적·주관적 |       |
|      |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 X     | ① 적정      | 해당없음  |
|      |                |       | ② 부적정     |       |
|      | 재정누수 가능성       | X     | ① 명확      | 해당없음  |
|      |                |       | ② 불명확     |       |
| 행정절차 | 접근의 용이성        | X     | ① 있음      | 해당없음  |
|      |                |       | ② 없음      |       |
|      | 공 개 성          | X     | ① 예측가능    | 해당없음. |
|      |                |       | ② 예측곤란    |       |
|      | 예측가능성          | X     | ① 없음      | 해당없음. |
|      |                |       | ② 있음      |       |
| 부패통제 | 이해충돌 가능성       | X     | ① 없음      | 해당없음. |
|      |                |       | ② 있음      |       |
|      |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 X     | ① 없음      | 해당없음. |
|      |                |       | ② 있음      |       |

#### 4 해당부서 검토의견 (해당부서)

| 실·과 | 주요내용(조항) | 검 토 의 견 |
|-----|----------|---------|
| 감사관 | -의견 없음-  |         |

# 경상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재정수반요인

- 본 조례 개정안은 국가 「공직자윤리법」과 의결기준과 용어 등 상이한 일부분을 보완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으로 인한 추가 재정 수반 사항이 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 3. 미첨부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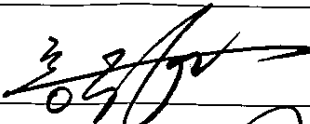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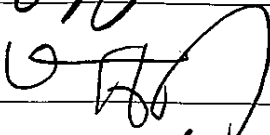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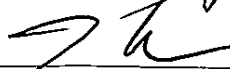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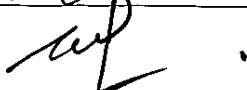
- 본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경상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회의 운영을 위한 의결 정족수를 조정하고 「공직자윤리법」과 상이한 용어가 있는 법률 조항을 수정함에 있어 추가비용 수반사항이 없으므로,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의거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함.

### 4. 작성자

- 감사관실 지방전산주사 여근동(☎054-880-4362)

## 발의의원 서명부

(제명 : 경상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  | 서명 및 날인                                                                              | 비고 |
|-----|--------------------------------------------------------------------------------------|----|
| 홍정근 |     |    |
| 박영식 |     |    |
| 김하수 |     |    |
| 김대인 |    |    |
| 김희수 |     |    |
| 김종영 |    |    |
| 이재돈 |   |    |
| 박우현 |  |    |
| 김기현 |  |    |
| 박채아 |   |    |
| 김상조 |   |    |
| 김정호 |   |    |
| 이필기 |   |    |
| 김시현 |   |    |
| 임미애 |   |    |

## 발의의원 서명부

(제명 : 경상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illegible]